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6.
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경기도자치12200 - 1689(96. 5. 16)호 및 경기도자치 12200 - 1688(96. 5. 16)호에
의거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가 승인됨에 따라
- 가스안전관리 및 재난관리기구, 시민고충관리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<분장사무 신설>

- 기획감사담당관실
 - 시민고충, 불편사항
 - 다수관련 민원관리
 - 기타 기획, 감사, 예산, 법무,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제2항).
- 총무국
 - 재난관리 및 지역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 - 기타 민방위 및 지역안전, 재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제6항).
- 복지환경국
 - 가스시설 승인·허가·신고 및 가스안전 업무(안 제5조 제2항).

이천시 조례 제 호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'제8호'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8호 다음에 '제9호 및 제10호'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시민고충·불편사항
 9. 다수관련 민원관리
 10. 기타 기획, 감사, 예산, 법무,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
제4조제6항중 “제5호”를 다음과 같이 하고 ‘제5호’ 다음에 ‘제6호’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재난관리 및 지역안전 관리업무
 - 기타 민방위 및 지역안전·재난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중 '제8호'를 '제9호'로 하고, '제8호'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#### 8. 가스시설승인, 허가, 신고 및 가스안전 관리업무

부 책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